

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537호 2022. 8. 30.(화)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2-142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고성군 공고 제2022-1431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0
고성군 공고 제2022-1432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0

화 람									
--------	--	--	--	--	--	--	--	--	--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 공고 제2022-1428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아동급식 지원 근거 법령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조례 근거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조례 위임 근거인 상위법령 조항을 변경함(안 제1조, 제2조, 제7조)

나. 맞춤법 표기 정정함(안 제5조)

다. 직책 및 업무 명칭 표기를 정정함(안 제9조, 제15조)

3. 의견 제출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2) 전화: (055)670-2624, 팩스: (055) 670-465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담당(☎055-670-262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아동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5조제4항”을 “제35조제5항”으로, “제36조제5항”을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5조제4항 및”을 “제35조제5항에 따라”로, “제36조제1항”을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읍면장”을 “읍·면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영 제36조제4항”을 “영 제36조제5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식품위생업무”를 “고성군 식품위생업무”로, “교육지원청의”를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부녀회장”을 “새마을부녀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제35조제5항 ----- 제36조제6항----- -----.</p>
<p>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p>	<p>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 ----- 제35조제5항에 따라 ----- 제36조제2항 및 제36조제6항----- -----.</p>
<p>1. ~ 9. (생 략)</p>	<p>1. ~ 9. (현행과 같음)</p>
<p>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군수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 ----- ----- ----- 읍·면장-----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4항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p>	<p>제7조(이의신청) ① 영 제36조제5항----- ----- -----.</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생 략)</p>	<p>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② (현행과</p>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아동 급식업무 담당 과장
2. 식품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또는 교육지원청의 급식업무 담당 공무원
3. 4. (생략)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위생 등을 감시·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2. ~ 5. (생략)

같음)

③ -----

-----.

1. ----- 부서장
2. 고성군 식품위생업무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
3. 4. (현행과 같음)

제15조(위생·안전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새마을부녀회장
2. ~ 5. (현행과 같음)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
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교육청소년과장 김 현 주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31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코로나 19의 확산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날로 어려워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창업 및 경영안정 등 지원(안 제4조 ~ 안 제5조)
-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안 제6조)
- 라. 재난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안 제7조)
- 마. 임대료지원, 소상공인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안 제11조)
- 바. 소상공인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12조 ~ 안 제15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우 5294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전화: 055-670-2302, FAX: 055-670-23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제4조(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2.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3. 창업(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을 포함한다)자금
4.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자문 및 교육
5. 소상공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 사업
6.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건강검진비 등 지원

8.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 조건, 절차, 대상 등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피해 등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8조(임대료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장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2. 소상공인의 세대원 전부가 다른 사업장이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 2년 이내에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적이 없을 것

② 지원 금액, 대상 업체 수, 지원기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관계망서비스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정보제공·소통 등을 위하여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이하 “소상공인 SNS 서포터즈”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SNS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 촉진 행사, 공모전, 홍보 이벤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고성사랑상품권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배부할 수 있다.

제12조(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군 소재 금융기관의 임직원
3.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사후 관리) ①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의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

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25조(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湓),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 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2-1432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30.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나. 지역상생구역의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일자리경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우 52943 /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전화: 055-670-2302, FAX: 055-670-2309)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붙임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고성군 조례 제 호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7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상인
2. 생애 최초 창업자

제8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의 건전한 영업과 상생발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상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상가건물(「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임대인·임차인, 토지소유자, 주민 등이 어우러져 지역에 특화된 생활·문화·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가건물 밀집지역을 말한다.
2.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다. 제12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한 곳이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구역”이란 지역상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곳
 - 나. 해당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다. 제15조에 따른 구역의 지정 신청 당시 사업체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곳
5.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9조(조례의 제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역 내 활성화구역 운영 및 지역별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① 준비위원회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정관

등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①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
 8. 그 밖에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활성화구역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의 감면
 2.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의 용자
 3. 상인 및 제2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입주한 자에 대한 시설비, 운영비 등의 용자
 4.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의 보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범위,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업종 제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상생구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상생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사업 중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점포의 경우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체인본부가 직영하는 점포에 한한다)
5. 그 밖에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금지·제한되는 영업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의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공고해야 한다.

③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지·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상생협의체와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및 지역상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사전사업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를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조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100개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을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
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판로지원·홍보 등 지원
3. 축제·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
4. 상인 등에 대한 교육·경영 지원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자율상권조합이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추진 목적 및 방안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
3. 사업 완료 후 효과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상인 등과의 협의 방안
5. 그 밖에 자율상권조합 지원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23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상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상시영업상인
2. 자율상권조합
3. 그 밖에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고성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